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우선 구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10. 개정,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10. ~ 12. 2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중 “영 제35조의5제1항”을 “법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신청인제출서류 란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임대차계약 해지 대상주택)		
	거주기간(전입신고일부터)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주할 지역	

해지 허가 사유	[]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임대차계약해지허가신청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	없 음
	3.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명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본인정보 제공 본인 동의서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포함)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지방자치단체	→	검 토 지방자치단체	→	결 재 지방자치단체	→	해지 허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u>영 제35조의5제1항</u> 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 ----- ----- ----- ----- ----- <u>법 제17조의5제1항</u> ----- ----- ----- -----.			
제7조(거주지 보호대장 등) ①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대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7조(거주지 보호대장 등) ①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대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 삭제 ></u>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착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3